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·진동·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·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451호, 2020. 6. 9. 공포,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,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사항 및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지원 대상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2(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사업

제46조의2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) ① 법 제59조의4제1

항에 따른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(“이하 정비지구”라 한다)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.

1.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2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 부지면적의 합이 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
3.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의 신설·확장·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가 필요하거나 소음·진동 방지,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

②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
2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·환경 개선 효과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정비지구의 면적, 정비사업의 비용 및 정비지구의 현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100분의 5 미만의 변경

2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, 그 밖에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

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비지구 신청의 개요,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및 의견제출 시기·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 등이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2.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은 정비계획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3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비계획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·군·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

한다.

제46조의3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의 지정) ①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
2.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
3.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
4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, 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9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2. 정비지구의 현황(인구수,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·교통량·물동량 등)
3. 도로의 신설·확장·기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
4. 소음·진동 방지,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
5.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
6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·환경 개선 효과

7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
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의4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) ① 법 제59조의6제1

항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
2.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
3.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
4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, 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라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2. 정비지구의 현황(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)

3. 정비지구 해제 사유

4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법 제59조의6제5항에 따른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시·도지사는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개요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및 의견제출 시기·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 등이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2.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3. 시·도지사는 정비지구 지정 해제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·군·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5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사업의 지원)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“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·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
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

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4장의2 물류 교통 · 환경</u> <u>정비사업</u> <u>제46조의2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</u> <u>지구의 지정 신청) ① 법 제59</u> <u>조의4제1항에 따른 물류 교통 ·</u> <u>환경 정비지구(“이하 정비지구”</u> <u>라 한다)로 지정될 수 있는 지</u> <u>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</u> <u>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.</u> <u>1.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</u> <u>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</u> <u>일 것</u> <u>2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 부</u> <u>지면적의 합이 정비지구 면적</u> <u>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</u> <u>3.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의</u> <u>신설 · 확장 · 개량 및 보수 등</u> <u>교통정비가 필요하거나 소음</u> <u>· 진동 방지, 대기오염 저감</u> <u>등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일</u> <u>것</u> <u>②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</u> <u>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</u>

항을 말한다.

1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

2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·환경 개선 효과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정비지구의 면적, 정비사업의 비용 및 정비지구의 현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100분의 5 미만의 변경

2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, 그 밖에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

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비지구 신청의 개요,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및 의견제출 시기·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 등이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2.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은 정비계획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3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비계획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·군·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6조의3(물류 교통·환경 정비

지구의 지정) ① 법 제59조의5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

2.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

3.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4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, 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9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

<신 설>

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
2. 정비지구의 현황(인구수,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·교통량·물동량 등)

3. 도로의 신설·확장·기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

4. 소음·진동 방지,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

5.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

6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·환경 개선 효과

7.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

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의4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) ①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계획

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

2.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

3.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4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, 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6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59조의6 제3항에 따라 정비지구 지정을

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
2. 정비지구의 현황(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)

3. 정비지구 해제 사유

4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법 제59조의6제5항에 따른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시·도지사는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개요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및 의견제출 시기·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 등이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2. 정비지구 대상지역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

<신 설>

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3. 시·도지사는 정비지구 지정 해제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·군·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5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사업의 지원)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“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·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
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07